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4서식] <신설 2023. 3. 20.>

1주 택 확 인 서

본인은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자로서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연금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(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하였음)을 확인하며,

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연금주택의 양도가액보다 가액이 높은 주택을 취득하는 등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납입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(본인): (인)

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(날인)하여 본인의 _____(가족관계 기재)인 _____(성명 기재)을 통해 제출합니다.

신청인(본인): (인)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대리(수임)인: (인)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